

등록번호	
등록일자	
결재일자	
공개구분	부분공개(5)

협조자					

# 2021년 인천 서구 적극행정 실행 계획 [안]

2021. 4.



**인천광역시 서구  
(기획예산담당관)**

# 업 무 요 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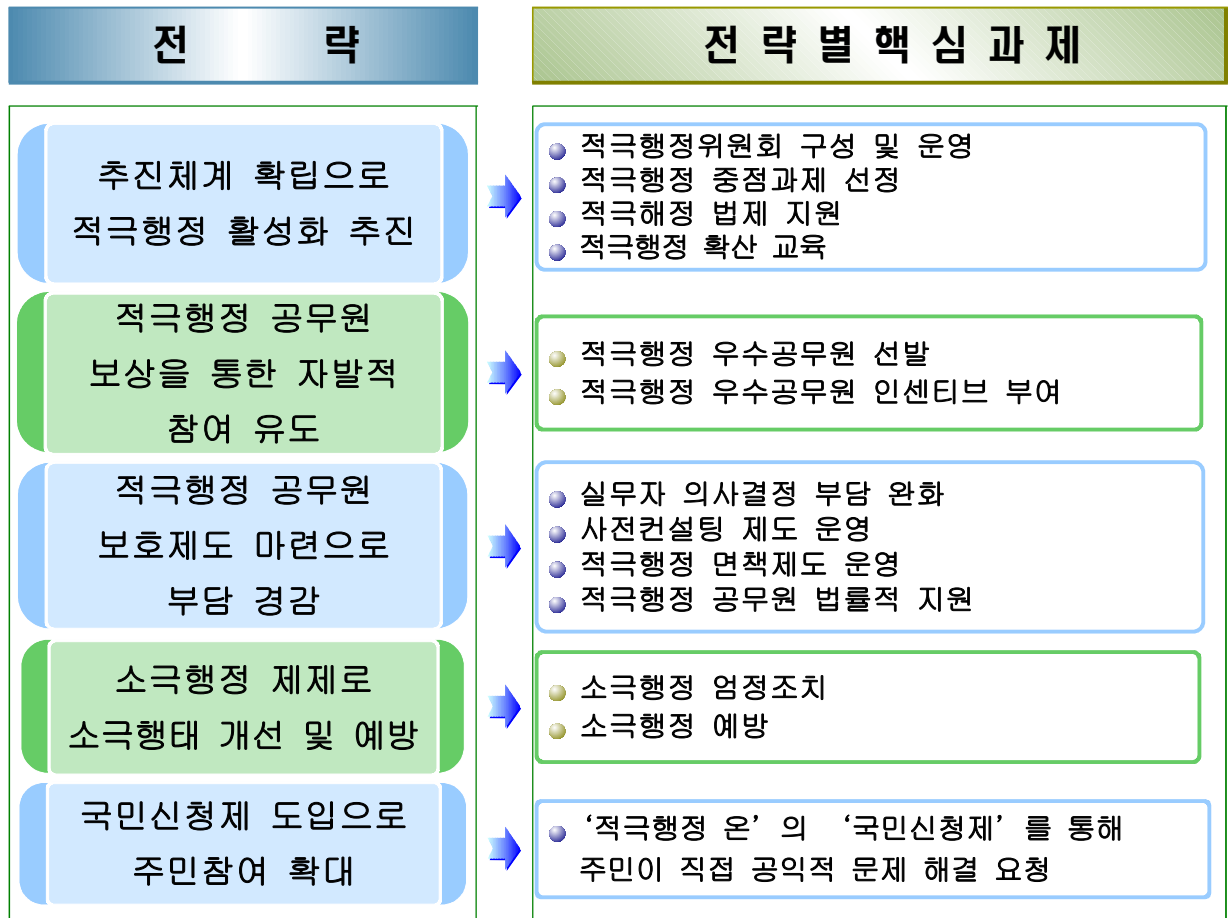
## 제 목 2021년 인천 서구 적극행정 실행 계획(안)

추진배경

-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인식 확산, 실천 유도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

적극행정 추진 전략 및 과제

### 목표 적극행정 활성화로 주민행복도 향상



향후계획

-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발굴
-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

# || 목 차 ||

<b>I. 적극행정 추진 방향</b> .....	<b>1</b>
1. 추진배경 .....	1
2. 그간의 적극행정 추진 실적과 성과 .....	1
3. '21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방향 .....	4
<b>II.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</b> .....	<b>4</b>
1.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.....	4
2.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.....	5
3. 지방공기업 적극행정 확산 .....	7
4.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.....	7
5. 적극행정 법제지원 .....	9
6. 적극행정 확산 교육 .....	10
<b>III.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</b> .....	<b>11</b>
1.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.....	11
2.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.....	13
<b>IV.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</b> .....	<b>14</b>
1.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.....	14
2.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.....	18
3.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.....	19
4.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적 지원 .....	19
<b>V. 소극행정 혁파</b> .....	<b>20</b>
1. 소극행정 엄정 조치 .....	20
2. 소극행정 예방 .....	22
<b>VI. 국민신청제 운영</b> .....	<b>23</b>
1. 국민신청제 개요 .....	23
2. 운영절차 .....	24
3. 세부추진절차 .....	25
<b>VII. 향후 계획</b> .....	<b>27</b>
붙임 .....	28

# 2021년 인천 서구 적극행정 실행계획(안)

## I

### 적극행정 추진 방향

#### 1. 추진배경

##### 적극행정 문화 정착 필요

- (소극적 행정관행)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각종 정책(적극행정 면책 등)을 추진하였으나 법령의 해석이나 운영과정에서 소극적 행정 여전
- (급변하는 행정환경)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법·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가 점차 증가로 적극적 대처하는 공직자의 자세 필요

##### < 적극행정 관련 대통령 말씀 >

- ❖ “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려면 현장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” “모든 부처가 장관 책임아래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면책하며 나아가 보상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주시기 바람” (대통령, 수석·보좌관 회의, ‘19.2.10)

##### 적극행정으로 ‘코로나19’ 위기 극복

- (위기 극복의 수단)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평상시를 전제한 법령과 정책을 넘어 전례 없는 조치를 통한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한 적극행정이 절실한 상황
-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본격 활용

#### 2. 그간의 추진실적과 성과

- ( ‘19년, 구축) 적극행정 본격 추진의 첫해인 ’ 19년, 적극행정을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불업을 추진

##### 제 도 화

- ▲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▲소극행정 신고센터 설치·운영
- ▲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

( '20년, 확산) 적극행정 제도를 내실있게 활용

-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공포(' 20. 3. 9.)
-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완료( '20. 3. 18.)

		2020
제도활용	적극행정위원회 심의건수	5회(안건 7건)
	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	13명

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

- 대상자 :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총 13명(상반기 5명, 하반기 8명)
- 인센티브 부여

시기	인센티브 유형	비고
상반기 (5명)	성과상여금 A등급 이상(2명), 실적가산점 1.0점(3명),	동일부여
하반기 (8명)	성과상여금 최고등급(1명), 실적가산점 1.0점(4명), 실적가산점 0.5점(1명), 희망부서로의 전보(1명), 특별휴가 1일(1명)	등급에 따라 차등부여

\* 인센티브 유형에 따라 부여 시기 상이

적극행정 교육 및 공직문화 확산

- 찾아가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( '19.8. 74명)
- 적극행정 실천 및 소극행정 사례 교육( '19.9. 47명)
- 구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 개설( '20.1.)
- 맞춤형 적극행정 사례교육( '20. 10. 97명)

적극행정 법제지원

- 적극행정 법령 유권해석 DB 전파 및 홍보

- 조직 내 게시판에 행안부 및 법제처 법령유권해석 사례 DB 게재
  - 최근 4년간 주요 인허가 경제 사회분야 등 21개 법령의 2,539여건 유권해석 사례를 DB자료 공개를 통한 홍보

○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지원

- 「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법제처의 ‘자치법규 입법컨설팅’ 지원 및 우수사례 선정

○ 법제처 법령 의견제시를 통한 자치법규 사전심사 지원

-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법리적 쟁점에 대해 법제처의 사전 의견제시 제도 적극 활용 및 지원

소극행정 신고센터 상시 운영

○ 소극행정 신고 처리 결과

(작성기준일 : 2020. 1. 1. ~ 12. 31.)

소극행정 해당여부 및 유형					기관처리 건수						
해당 (소계)	적당 편의	업무 해태	탁상 행정	기타 관중 심행정	합계 (A+B)	처리중			처리완료		
						소계 (A)	감사 실	타부 서	소계 (B)	감사 실	타부 서
4	1	3	0	0	1,173	0	0	0	1,173	36	1,137

- (소극행정 조치내용) 1건의 적당편의 및 3건의 업무해태에 대하여 담당자 주의 및 재발방지 교육 실시

### 3. 2021년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방향

## 목표 적극행정 활성화로 주민행복도 향상



## II

###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

#### 1.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

◆ 근거규정 :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6조(전담부서의 지정)

**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**

- (추진배경) 적극행정 업무가 인사·교육·감사·혁신·법무 등 다양한 부서와 관련되어 적극행정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추진할 총괄부서 및 책임관 필요
- (전담부서) 기획예산담당관 / (책임관) 기획예산담당관  
(총괄팀장) 기획팀장 / (담당자) 김현주

**적극행정 관계부서별 업무분장 및 협조체계**

소관부서	담당 업무	비고
기획예산담당관 (기획팀)	-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-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-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-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정 - 적극행정 교육	적극행정 전담부서
기획예산담당관 (법무통계팀)	-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적 지원 - 적극행정 법제지원	
총무과 (인사팀)	-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- 적극행정 상시 교육체계 구축	
감사실	-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-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- 소극행정 엄정 조치 및 점검 - 소극행정 신고센터(국민신문고) 운영	

**2. 적극행정위원회 구성·운영**

◆ 근거규정 :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0조 및 제11조

**기본방향**

- 적극행정위원회를 주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는  
‘주민참여형 적극행정’의 뒷받침 역할 강화

- 적극행정위원회는 법리적 해석뿐만 아니라 민간위원과 함께 합목적적 판단까지 가능하므로 주민·기업의 관점에서 해결방안 제시

### 주요 심의·의결 사항

- 1)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2) 적극행정 위원회에 **직접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**
- 3) 적극행정 **우수공무원**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심의·의결  
(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도 포함)
- 4)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한 필요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
- 5) 그 밖에 **적극행정 과제 발굴** 등 적극 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·추진에 관한 사항

## □ 구성 및 운영

- (구성) 위원장(부구청장) 포함 9명
  - (당연직 4명) 부구청장, 미래기획실장, 자치행정국장, 감사담당관
  - (위촉직 5명) 변호사 2명, 서구 인사위원 2명, 구민감사관 1명
  - \* 간 사(적극행정 책임관): 기획예산담당관
- (운영) 가급적 격월 개최 단, 안전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
- (운영방식)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 개의 /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- (회의방식) 대면회의 원칙 그 외 서면회의, 온라인 영상회의 가능
  -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없는 분야 안전의 경우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
- (상급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청취)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상급(광역 자치단체-인천광역시청)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을 청취

## 3. 지방공기업 적극행정 확산

## □ 추진배경

- 지방공기업(시설관리공단)까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여 구민을 위한 적극행정 구현

※ 자치단체-지방공기업 적극행정 협업·확산 방안(지방인사제도과-369, 2020.1.22.호)

#### 시설관리공단 적극행정

-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
  - (전담부서) 시설관리공단 혁신기획실 / (책임관) 혁신기획실장
- (책임관 회의) 서구청과 시설관리공단 책임관 회의 정례화로 기관 간 적극행정 관련 시책, 우수사례 등 공유
- 시설관리공단의 자체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유도
- (지방공기업 적극행정 변화 유도)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및 사전컨설팅 자문 지원

---

#### 4.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

---

##### 추진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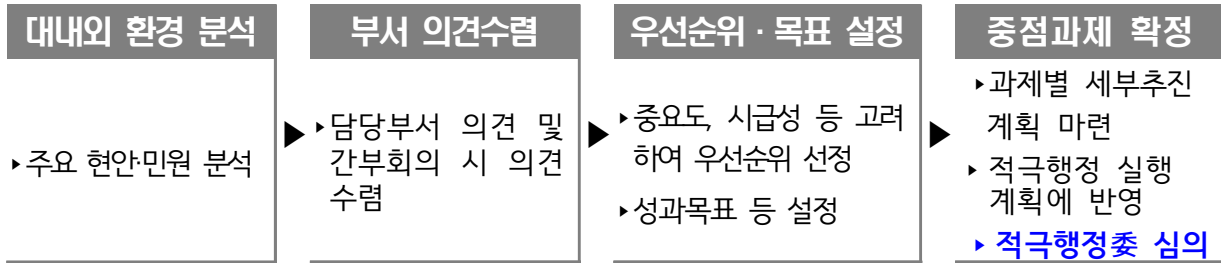
-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중점과제 선정 및 실행계획 반영을 통한 특별관리

##### 선정기준

- 주민편의 제고 및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민 체감형 중점과제 선정
  - 기존 업무 추진성과가 미흡했거나 장기 미해결 과제
  -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한 과제
  - 선제적 해결이 필요한 현안
  - 혁신·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과제

-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의 경우 연내 달성 가능한 세부 목표를 선정하여 추진

〈 중점과제 선정 프로세스 〉



추진방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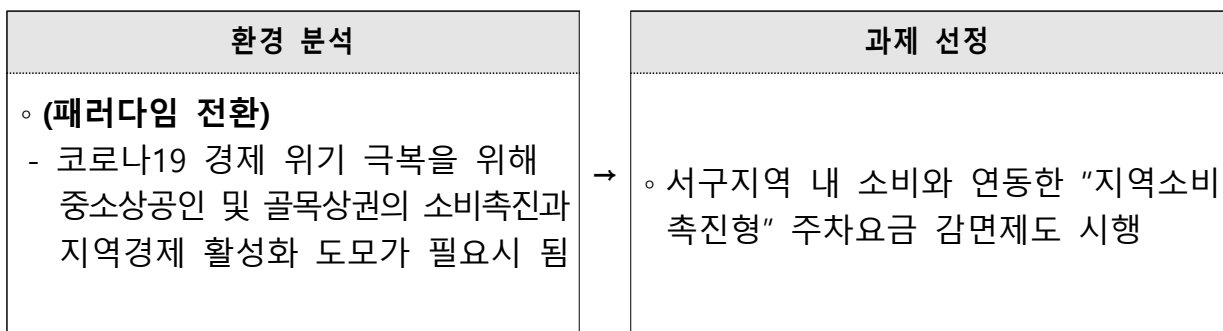
- 의사결정 지원 및 면책,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적극행정 관련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업무 추진 지원
- 분기별 중점과제 추진 경과 및 성과 점검\*

\* 중점과제 이행목표 설정을 통한 분기별 이행실적 확인으로 중점과제 추진성과 점검

적극행정 중점과제 발굴 현황 (세부내용은 붙임 참고)

- “지역소비 촉진형” 주차요금 감면제도 시행

- (목표) ① 주차요금 감면제 시행을 통해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  
②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불법 주정차 감소 유도



왕길동 장기간 적치된 적재물 처리

- (목표) ① 사월마을 주변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공익실현  
② 장기간 지속된 구 현안사항 해결

환경 분석	과제 선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(공익을 위해 처리 필요성 대두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속적인 행정조치에도 처리지연</li> <li>- 공약사항 이행 및 조속한 처리 필요성 대두</li> <li>- 처리 책임자로부터 적치물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처리시설 증설요청</li> </ul> </li> <li>◦ (관련 규제로 인한 변경허가 불가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구 예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은 허가받은 건축물 내에 설치</li> <li>- 불법 적치물로 인해 건축물 허가가 불가하여 처리시설 증설(변경허가)불가</li> </ul> </li> </ul>	<p>→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공익 실현을 위해 관련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여 왕길동 불법 적채물 처리</li> </ul>

## 5. 적극행정 법제지원

### □ 적극행정 법령 유권해석 DB 지원

-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자료 조직 내 게시판 연계
  - 반복적인 유권해석 자료를 통하여 불합리한 행태규제 사전 차단

### □ 법제처 『자치법규 입법컨설팅』 제도 적극 지원

- 자치법규 사전심사 단계에서 법제처 입법컨설팅 활용을 통한 적극행정 법제 입안 지원
  - 연초 법제처 사전입법컨설팅 수요 신청 후 상시 지원 가능

### □ 법제처 『자치법규 사전 의견제시』 제도 활용

- 자치법규 사전심사 단계에서 법리적 쟁점으로 유권해석 필요시 지원 절차 활용 및 법령해석사례 공유
  -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각 기관의 법령해석사례 DB 홍보 및 활용

## 6. 적극행정 확산 교육

### □ 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교육(집합교육)

- (목적) 적극행정과 지원제도·사례에 대한 전파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인식 전환 및 공직사회 내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
- (대상/시간) 전 직원 / 연 1회 이상(법정 의무교육)
- (교육방법) 적극행정 사례교육(집합교육)

#### < 교육내용 >

- ❖ 적극행정 면책 인정·불인정 주요 사례 소개
- ❖ 소극행정 개념·유형 및 주요 사례 소개
- ❖ 적극행정 경진대회 주요 수상작 소개

### □ 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 교육

- 적극행정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 추진
  - (추진시기) '21. 10월 중
  - (추진내용) 기존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·적용하기 위한 법제 교육
  - (기대효과) 적극행정 법제 패러다임 마인드 확립

### □ e-적극행정의 이해(사이버 교육)

- (대상/시간) 전 직원/ 2시간 (2월~11월)
- (교육방법)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수강신청 및 학습

#### < 2021년 적극행정 교육자료 >

구 분		교육시간	제공가능시기	비고
온라인 교육용	▫ e-러닝(적극행정의 이해)	2H		보완
	▫ e-러닝(2021 적극행정 추진방안)	0.5H		신규
	▫ e-러닝(사례를 통해 배우는 알기 쉬운 적극행정)	0.5H		신규
	▫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 (영상, 웹툰, 카드뉴스 등)	회차별 10분 이내		신규

1.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

□ 선발 개요

- (근거규정)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
- (선발대상) 2021년도에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(공무원)
- (선발시기) 상반기, 하반기 나눠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
- (선발요건)
  - 창의적·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
  -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등의 노력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
  - 장기 미해결된 민원 또는 갈등 해결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
  - 적극적인 자세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한 공무원
  - 중점과제로 선정된 사업 중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

□ 심사기준 및 분야

- (기준) ① 주민체감도(30), ② 과제의 중요도·난이도(20), ③ 담당자의 적극성(20), ④ 창의성·전문성(20), ⑤ 확산가능성(10) 등
- (분야)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, 민원 해결, 공공서비스 질 향상, 새로운 정책 발굴·추진, 행정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정도\*를 평가

\* 단순히 실적과 능력이 뛰어난 우수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, 추진성과를 기준으로 담당자의 적극성·창의성·전문성, 주민체감도, 과제의 중요도·난이도를 심사

○ (제외대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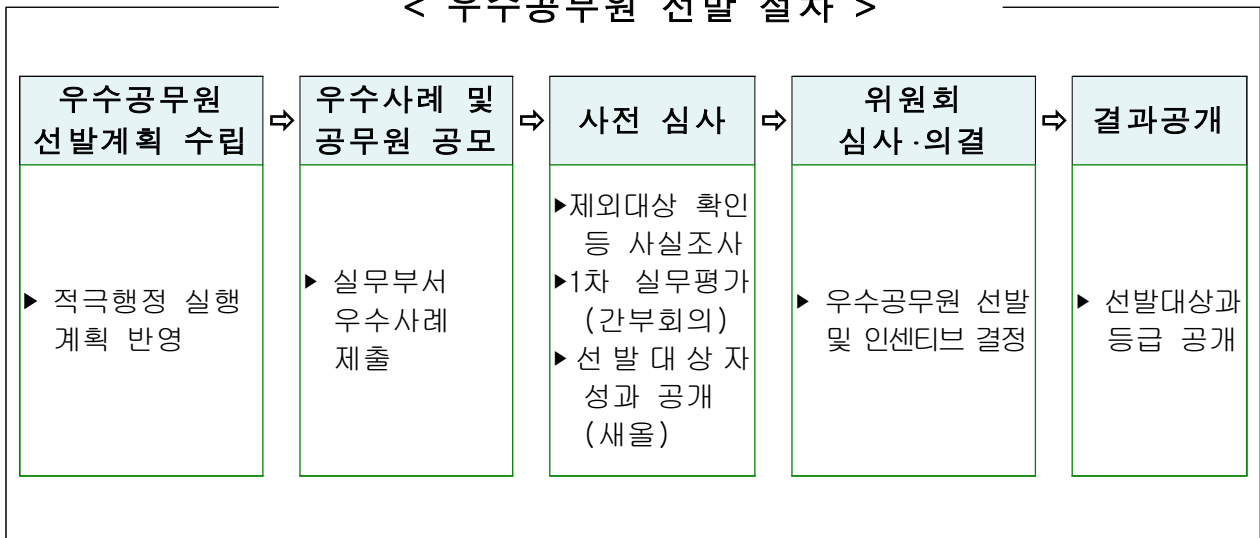
제외대상

- ▶ 기 수상사례 및 기존 유사사례의 일부 내용을 단순 수정·변경한 경우
  - ※ 수상경력(연도, 시상부처, 훈격, 사례명, 시상대회 등)과 새로운 성과 명확하게 제시
- ▶ 기타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,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사례

- ▶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자,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 
다만, 징계 등이 사면되었거나 주요비위(금품·행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음주운전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)가 아닌 징계나 불문(경고)처분이 말소된 경우 선발 가능
- ▶ 추천일 현재 1년 이내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자
- ▶ 기타 공·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 등을 야기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

## □ 선발절차

### < 우수공무원 선발 절차 >



#### ① 부서별 적극행정 우수사례(공무원) 제출

- 부서장이 공적 확인하여 각 실·국장, 보건소장이 추천
- \* 동행정복지센터 ⇒ 자치행정국장 추천

#### ② 사실조사를 통한 제외대상 조사

- 우수사례(공무원)에 대한 포상·징계여부 확인(감사담당관, 총무과)
- 선정대상자 및 우수사례 개시(새올 시스템) 및 이의신청 접수

#### ③ 간부회의(부구청장 주재) 사전 심사

- 부구청장 간부회의 시 접수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1차 심사
- 적극행정 우수사례 해당여부 선별

#### ④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사 및 선발

- 심사결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

##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

\* 우수사례가 없는 경우 미선발 (총점 70점 미만)

---

### 2.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

---

#### 인센티브 부여

- (관련근거) 『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』 제14조(인사상 우대조치)
- (원칙)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인센티브 1개 부여
- (부여시기)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후 희망 인센티브별 적시 반영

#### 인사상 인센티브 유형

- (특별승진) 5급이하 공무원 대상 1계급 승진 임용
- (특별승급) 호봉제 적용 공무원 1단계 승급
- (근속승진기간 등 단축) 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위한 근무기간 1년 단축
- (성과상여금)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
- (실적가산점) 상·하반기 근무평정시 1.5점 범위 내 가산점 부여
- (희망전보) 필수보직기간 경과전이라도 희망부서로 전보
- (교육훈련) 국내 장기·단기 교육훈련 우선 선발
- (기타) 특별휴가 부여 등

## □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기준

구 분	인센티브 유형	비고	
최우수 (90점 이상)	·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· 교육훈련 우선 선발(장기·단기) · 희망부서로의 전보	· 실적가산점 1.5점 · 특별휴가 3일	택1
우 수 (80점 이상)	·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A등급이상 · 교육훈련 우선 선발(장기·단기) · 희망부서로의 전보	· 실적가산점 1.0점 · 특별휴가 2일	택1
장 려 (70점 이상)	· 실적가산점 0.5점 · 교육훈련 우선 선발(단기)	· 특별휴가 1일 · 희망부서로의 전보	택1

\* **법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 구가 수상 시** (6월, 11월)

: 우수사례 담당 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 후 인사상 우대 (인센티브 유형 확대 적용)

구 분	인센티브 유형	비고	
전국대회 수 상 자	· 특별승진 · 근속승진기간 및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 단축 ·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· 교육훈련 우선 선발(장기·단기) · 희망부서로의 전보	· 특별승급 · 실적가산점 1.5점 · 특별휴가 3일	택1

## IV

###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

#### 1.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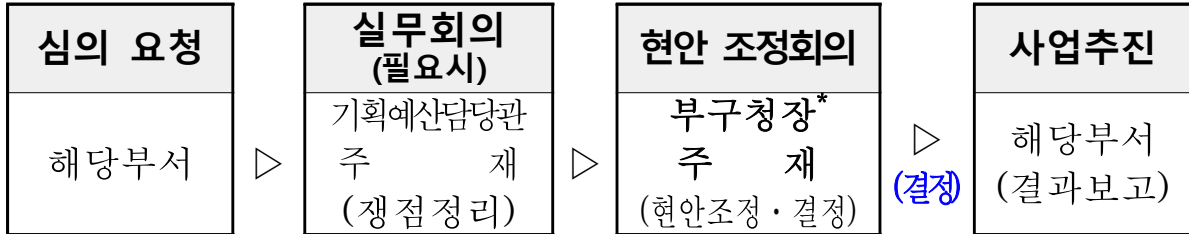
##### □ 정책현안 조정회의 운영

○ (추진목적) 중요 정책 및 사업의 중요 결정사항을 실무자만의 부담이 아닌 전 조직이 협력하여 이루어내는 시스템 구축

-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 생산
- 통제와 관리가 아닌 지원중심 조직으로의 탈바꿈
- 토론을 통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적극행정 현실화

○ (운영방식)

- 참석대상 : 각 국장, 관련 부서장, 전문가 등
- 회의 진행 절차



\* 중요 현안사항 조정(결정) 시 구청장 주재

○ (성과 및 기대 효과)

시행 전(As-Is)	시행 후(To-Be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서 간 이견 사항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결정회피로 사업 지연</li> <li>-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음</li> </ul> </li> <li>○ 중요 정책 결정사항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담당자, 부서장 책임 가중으로 결정 회피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서 간 이견 사항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업무 조정 및 결정으로 신속한 사업 진행</li> <li>- 문제해결을 위한 T/F 구성</li> </ul> </li> <li>○ 중요 정책 결정사항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 책임하에 정책 결정</li> </ul> </li> </ul>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정책결정에 대한 실무자 부담 가중</li> <li>2) 문제해결 회피, 사업 지연으로 주민불편 가중</li> </ol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전 조직이 협력하여 이루어내는 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</li> <li>2) 신속한 문제해결과 사업진행으로 주민편의 증진</li> </ol>

적극행정 처리 방향 제시

◆ 근거규정 :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2조

- (추진배경) 공무원이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, 적극행정위원회가 처리방향 제시
  - 사전컨설팅과 함께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에게 선택가능성을 부여하고 의사결정 지원 창구를 다양화하며, 공무원을 중첩적으로 보호

○ (추진개요)

- (운영기간) 연중

- (신청대상) 인가·허가·등록·신고 등과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공무원

- (운영 프로세스)



**1단계 :**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중요결정사항 심의요청

▶ 해당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공문 신청

단, 사전에 법률검토 후 신청(심의 안건 제출 시 검토내용 기재)

**2단계 :** 의견제시를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 방지위해 안건의 중요성·시급성 검토

▶ 적극행정 책임관 (기획예산담당관)

**3단계 :** 필요시 심의 내용 사전 검토 및 처리방향안 마련

▶ 부구청장 주재 간부회의

**4단계 :** 적극행정 업무의 처리방향 최종 제시

▶ 적극행정위원회 개최

### < 안건 제한 사유 >

- ▶ 담당자와 대상업무(사례)간 사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
- ▶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
- ▶ 관계법령이 명확한 경우 등 신청자의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▶ 인가·허가 등의 거부처분
- ▶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·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
- ▶ 이미 내려진 처분의 위법·부당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
- ▶ 감사·조사 또는 수사, 소송, 행정심판 등이 진행 중인 경우
- ▶ 부서 간 업무조정 또는 단속 강도의 조율 등 적극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항
- ▶ 구청장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무

\* 사전컨설팅을 신청했거나 답변을 받은 경우 안건 제한사유는 아니며

위원회 심의 시 사전컨설팅 의견을 참고자료로 활용

- (처리기한) 안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

\*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신청자와 협의 하에 기한 연장 가능

- (운영방법)

· 대면회의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 회의 가능

· 안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며,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활용

·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대립 되는 등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(회의 참석 또는 서면 의견 제출)

- (의견제시 반영여부 회신)

·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를 통보받은 해당 부서장은 위원회 의견의 반영 여부 등을 서식에 따라 공문 제출

\* 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한 내용 또는 미반영 한 경우 미반영 사유 등 기재

○ (의견제시 효과)

- (징계등 면제)\* 의견제시를 받은 사안에 대해 징계 의결이 요구된

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등 면제

\*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

- (징계요구 등 면책)\*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한

공무원은 자체감사 시 징계 요구 등 면책

\*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

※ 면책대상 제외 -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6조 해당 경우

---

## 2.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계획

---

### □ 인천광역시에 대한 사전컨설팅 신청요건 및 처리절차

- (관련규정) 인천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칙
- (신청주체) 구청장(구 감사대상부서는 구 감사부서를 거쳐 신청)
- (대상업무) 적극행정 지원 사무, 법령 등 해석사무
  - 인·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
  -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·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
  -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
  -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
- (신청절차)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장에게 신청
  -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 전, 서구청 감사부서의 장의 검토 실시
- (처리절차) 서면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병행
  - 인천광역시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되,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기관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
- (처리기간)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
- (효과)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「인천광역시 감사 규칙」에 따른 감사 면제

---

## 2.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계획

---

### □ 면책심사 상담창구 운영 : 감사기간 중

- (개요)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운영으로 '감사 걱정 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' 조성

- (근거) 「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」
- (요건) 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익을 위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,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로서,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
- (면책제외대상)
  - 금품수수의 경우, 고의·중과실,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
  -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
  - 위법·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
- (반영)
  - 감사보고서 작성 시 적극행정 면책 사례 있는 경우 포함 작성

### 3.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적 지원

#### □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적 지원

- (지원대상)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공무원의 형사 및 소송사건
- (주요내용)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형사 및 소송사건에 대해 소속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소송대리인 선임 등 지원
- (처리절차)
  - 형사 및 소송사건의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 방침을 받아 소송대리인 선임 요청
  - 소송대리인 선임 및 비용지원(기획예산담당관)
  - \* (소송비용 회수) 형사사건 유죄판결 확정, 민사소송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패소

#### □ 추진일정

- 2021년 연중 :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 등 지원

## 1. 소극행정 엄정 조치

## □ 소극행정의 정의

-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

## □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(예시)

분 류	정의 및 판단기준
적당 편의	<p>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,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</p> <p>◆ 판단기준&lt;예시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·지식·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</li> <li>·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, 민원인 등과 타협·절충으로 대충 처리</li> <li>· 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·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</li> </ul>
업무 태만	<p>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</p> <p>◆ 판단기준&lt;예시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, 관리·감독 소홀, 느장 대응 등의 행태</li> <li>· 민원신청·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·처리하지 않는 행태</li> <li>· 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,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</li> </ul>
탁상 행정	<p>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,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</p> <p>◆ 판단기준&lt;예시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,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</li> <li>· 보다 효율적·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</li> <li>· 기타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</li> </ul>
기타 관중심 행정	<p>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,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</p> <p>◆ 판단기준&lt;예시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행태</li> <li>· 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(민원인 등)에게 떠맡기거나,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국민(민원인 등)이 대신 준비하거나 처리하게 하는 것</li> <li>· 규정·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·활용하거나, 법·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</li> <li>· 기타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행태</li> </ul>

□ 소극행정 엄정 조치

-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
  - 비위의 정도 및 고의·과실여부를 고려하여 "징계" 또는 "주의·경고"
  -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 및 승급 제한기간 6월 가산
- \* 주의 또는 경고 조치 시 「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 인사상 불이익 부여

【징계양정기준(지방공무원 징계규칙)】

비위의 유형	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	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	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/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	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/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	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
1. 성실 의무 위반					
다. 부작위직무태만(리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) 또는 회계질서 문란		파면	해임	강등-정직	감봉-견책
라. 소극행정		파면	파면-해임	강등-정직	감봉-견책

□ 소극행정 자체 점검

-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소극행정 행태를 자체 점검
  - 매년 분기별로 민원처리 확인·점검 후 위법, 부당한 민원처리 사항(민원처리 지연 등)에 대하여 관련 기준에 의거 조치

〈조치기준〉

위 반 내 용	처분내용	비 고
- 지적사항 항목별 3회 이상 반복 지적시 - 민원사무 처리기간 3일 이상 지연시	주 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1년간 점검결과를 기준으로 조치</li> <li>● 담당 공무원의 민원처리 경위, 업무 태도 등에 따라 처분 내용은 가감할 수 있음.</li> </ul>
-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에 따른 '주의' 3회 이상 조치시 - 민원사무 처리기간 5일 이상 지연시	훈 계	
-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에 따른 '훈계' 3회 이상 조치시	경징계	

## 2. 소극행정 예방

### '소극행정 신고센터(국민신문고)' 민원 접수·처리

#### ○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

- 「소극행정 신고센터」 운영 :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이용
- 감사부서에서 조사·처리하고, 결과통보

#### ○ 소극행정 민원 접수·처리 세부절차

- 소극행정 민원신청(민원인) → 소극행정 접수(감사부서) → 소극행정 여부 판단(감사부서) → 소극행정 조사·처리(감사부서)

#### \* 소극행정이 아닌 일반민원인 경우 처리부서 재지정

- '소극행정 신고센터' 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현황, 소극행정 유형, 시정조치, 처리사례 등을 분석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보고

### 소극행정 신고처리 현황

#### ○ 소극행정 신고민원 감사부서 처리 및 소극행정 해당 비율

(작성기준일 : 2020. 1. 1. ~ 12. 31.)

부서명	접수건수	처리건수	처리비율	소극행정 해당	소극행정 해당비율
합계	1,173	1,173	100%	4	0.3%
감사실	36	36	3.1%	4	11.1%
타부서	1,137	1,137	96.9%	0	0%

### 인·허가 거부처분시 불충분한 설명관행 개선

- (표준설명서식 활용) 인·허가 등을 거부하는 경우 회신 시 민원인에게 “표준설명양식” 을 활용하여 법적 근거와 불허가 사유, 주제절차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친절하고 성의 있는 답변 시행

#### ○ 표준설명서식 활용 안내 및 교육

- 전직원 활용 요청 공문 시행 및 기관장 지도하에 자체교육 실시

## 1. 국민신청제 개요

- (도입목적)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제도\*를 활용하여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 마련

\* 적극행정위원회,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요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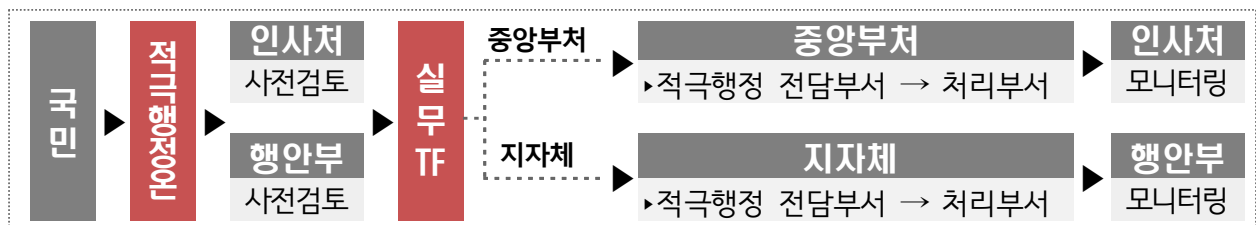
❖ (민원과의 차이)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공익적 문제에 대해 해결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행정민원에 대해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일반 민원과는 그 **취지와 활용 가능한 수단**에서 차이가 있음

- (신청요건) 신청 대상에 해당하면서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 신청 가능

신청 대상	예외 대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신청 대상에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可</li> <li>☑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</li> <li>☑ 타 민원·제안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</li> <li>☑ ①법령미비 ②법령 불명확 ③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해석 등 3가지 사유 중 하나로 반려된 사안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不可</li> <li>☒ 기존에 관련 민원 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또는 제안</li> <li>☒ 다른 법령에 의한 <u>구제절차</u>가 진행 중인 경우</li> <li>☒ 특정 개인·단체·기업 등의 수익과 연관된 경우</li> <li>☒ 신청하려는 내용이 이미 시행 중인 경우</li> <li>☒ 단순 질의·진정 불만 민원인 경우</li> <li>☒ 국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</li> <li>☒ <u>고도의 정략적 판단</u>을 요하는 경우</li> </ul>

- (운영절차) 시범 운영 기간동안 '적극행정실무TF'에서 각하 여부 1차 판단(21.6~21.12)  
- 시범운영 종료기간 이후, 우리구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각하여부 1차 판단(22.1.~)

\* 매월 회의 개최 / 국조실 주관 / 인사처·인사처·권익위·법제처·교육부·기재부 등 참여



※ 시범운영 기간(21.6.~21.12.) 동안의 처리 절차를 도식화한 것임

## 2. 운영 절차

※ 시범운영 기간('21.6.~'21.12.) 동안의 처리 절차를 도식화한 것임

① 신청 및 접수	국 민	신청 자격	❖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(개인, 법인)
	적극행정 홈페이지 (적극행정 온)	신청 요건	❖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❖타 민원·제안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<u>반려된 사안</u> ❖①법령미비 ②법령 불명확 ③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해석 등 3가지 사유 중 하나로 반려된 사안
		신청방법	❖'적극행정 온'의 '국민신청제' 페이지에서 신청
		신청 시 작성 항목	❖신청인이 직접 담당기관 및 처리부서 지정 ❖기 제기한 민원·제안의 처리결과를 증빙자료로 제출 ❖△반려사유가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, △법령 정비·해석 요청내용(대상법령, 해석결과 등), △법령 정비·해석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'공익적 목적'을 구체적으로 기술
② 처리	적극행정 실무 TF	각하여부 1차 판단	❖국조실 주관 적극행정 실무 TF에서 각하여부 1차 판단
	적극행정 담당부서	각하여부 2차 판단	❖신청인이 지정한 기관의 적극행정 담당자는 신청내용 열람 가능 ❖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변경 신청(→인사처, 행안부) ❖신청인이 지정한 처리부서에 전달하거나, 처리부서가 불명확·부적절한 경우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신청 내용 전달
	처리부서	내용 전달	❖적극행정 담당부서에서 처리부서로 내용 전달
		처리 시 유의사항	❖기존에 해결을 신청했던 사안이므로, 명백한 반려사유*가 없는 한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자문을 구해야 함  *(명백한 반려사유로 인정되는 사항) △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해결이 가능한 경우 △'처리 예외 대상'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  ❖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 사유 및 처리 상황을 신청인과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통지해야 함 ❖'처리 예외 대상'에 해당하여 반려하는 경우 반려 사유를 신청인,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통지해야 함
		관리사항	❖처리부서의 접수처리현황 관리 및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독려 ❖국민신청제 접수처리현황 등을 적극행정위원회에 월별 보고하여 기관 차원에서 관리하고, ❖인사처(중앙부처), 행안부(지자체)에 실적 제출
③ 사후관리	적극행정 담당부서	관리사항	❖실적 취합하여 전반적인 추진현황 관리 ❖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
	인사처 행안부		

### 3. 세부 추진절차

#### ① 신청 및 접수

#### ② 처 리

#### ③ 사후관리

#### ○ (신청인) 국민신청제를 통해 신청을 제기하는 개인·법인·단체\*

\* («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» 제2조 제1항 준용) 행정기관, 행정기관과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사법(私法)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, 성명·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은 제외

#### ○ (신청요건) ① 공익적 목적 ② 2차 신청 ③ 반려·불채택 사유 3가지

##### ① 공익적 목적\*을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

\* '공익적 목적'이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,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을 의미

##### ② 타 민원·제안 청구\*를 통해 기 신청했으나 반려 또는 불채택된 사안

구분	타 민원·제안 청구 예시
민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국민신문고(일반민원, 예산낭비 신고) ▲안전신문고 ▲규제개혁신문고</li> <li>▲그 밖에 «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» 제8조에 따른 민원 신청(전자문서, 문서 등)</li> <li>▼구술(口述) 및 전화로 신청한 민원은 인정되지 않음(기타민원)</li> </ul>
제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국민신문고(일반제안, 예산절감 제안, 일반·공모·공개·실시제안)</li> <li>▲청와대 청원, 국회 청원 ▲국민생각함 ▲부처별 홈페이지를 통한 제안</li> </ul>

##### ③ ▲법적 근거 미비 ▲불명확한 법령 ▲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법령' 중 1가지 이상의 이유로 인해 반려 또는 불채택된 사안

구분	예시
① 법적 근거 미비	법적 근거가 없어, '농산물 꾸러미 사업' 진행이 어려운 상황
② 불명확한 법령	전신주 이설 비용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이설 결정이 지연됨
③ 새로운 해석 필요	주류를 '알코올 1도 이상'으로 규정하는 주세법에 의해, 발효 이전의 맥주 키트는 주류로 인정되지 않아 맥주키트 제작 스타트업이 주류제조면허 발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

#### ○ (신청방법) '적극행정 온(ON)' 누리집의 '국민신청제' 코너에서 신청

- 신청인의 하루 최대 신청 가능한 횟수는 3회로 제한되며, 동일 안전에 대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할 경우 최초 안전을 제외하고 반려 가능

① 신청 및 접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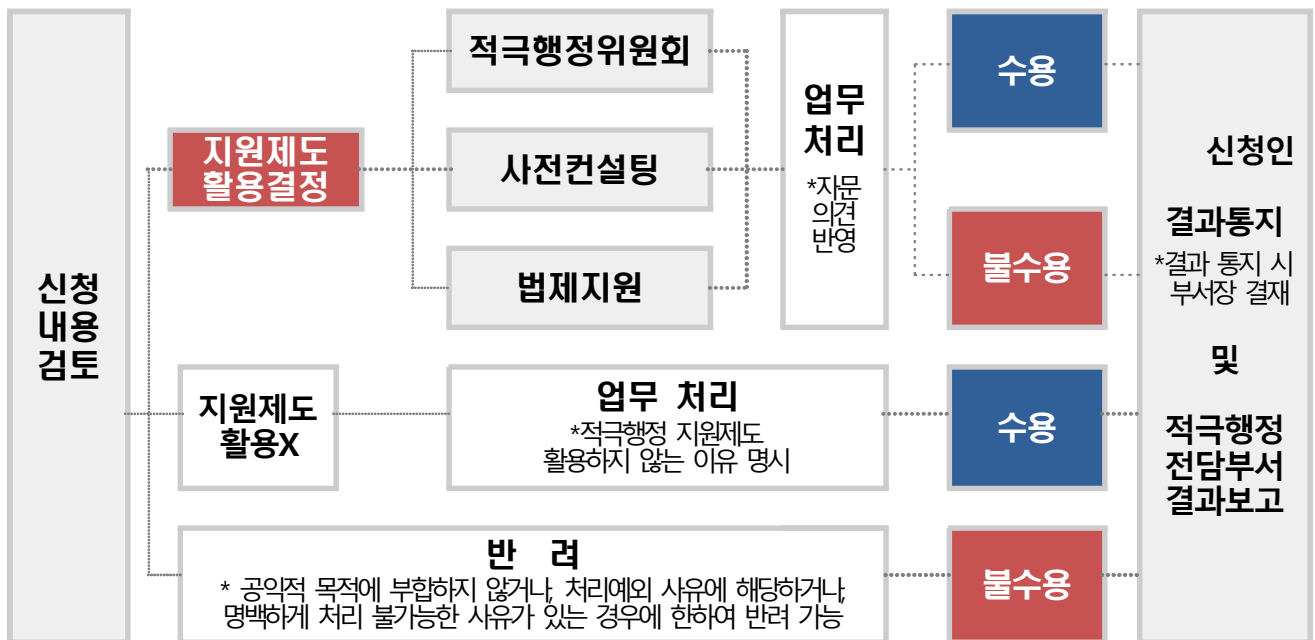
② 처 리

③ 사후관리

적극행정 온 신청서 작성	▶	적극행정 실무TF 1차 각하여부 검토	▶	적극행정 전담부서 처리부서 지정	▶	처리부서 검토 및 처리
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

- (적극행정 실무TF) 각하 여부를 1차 판단, 각하되지 않은 안건은 담당 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전달
- (적극행정 전담부서) 각하 여부 2차 판단, 처리부서 지정 또는 이송 신청
- (처리부서 역할) 국민신청 내용을 지정받은 처리부서는 신속하게 내용을 검토하고, 법령·규정에 대한 유연한 해석 등이 필요한 경우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
  -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추진 가능한 경우 미활용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및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결과 보고
  - 신청 내용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, '처리에외 사유'에 해당하는 경우, 또는 명백하게 처리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려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및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결과보고
  - 소극적인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리 결과통지 시 부서장 결재 필요

< 처리부서 업무 흐름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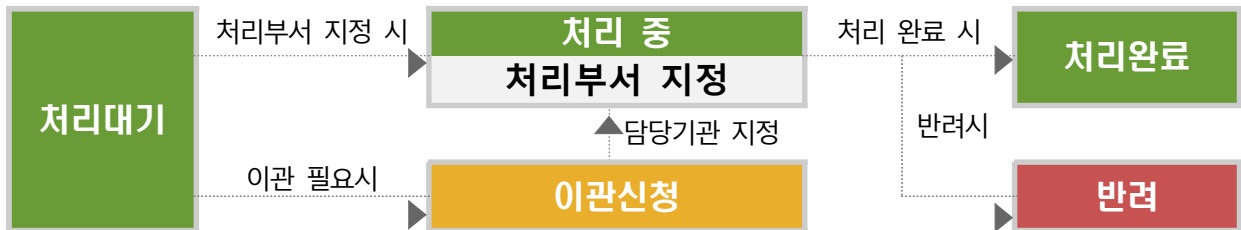


- (진행상황 관리)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진행현황에 따라 '적극행정 온'의 신청 건별 진행상황\* 수시 관리

\* '적극행정 온'을 통해 소관 신청 게시물의 '진행상황' 변경 가능

\* 신청인은 처리 완료 또는 반려 시 진행상황 문자로 통지(現 국민추천제와 동일)

#### < 진행상황 흐름도 >



- (적극추진 보고)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국민신청제 추진 현황\*을 적극행정위원회에 월별 보고

\* 국민신청제 접수 건수, 처리 현황(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처리/미활용 처리/반려 비율, 수용/불수용 비율, 처리부서 지정 현황 등)

- (실적 제출)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추진에 보고한 국민신청제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행안부(지자체)에 제출

## VII

### 향후 계획

####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및 우수공무원 선정

- (사례공유) 분기별 우수사례 제출(인천시 → 행안부)
- 2021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(7월, 12월)

#### 적극행정 분기별 점검

-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 수립( '21.4.)
- 분기별 이행 실적 점검

#### 협조사항(전부서)

- 전직원 e-적극행정의 이해 (사이버) 교육 이수 추진 (수시)
- 적극행정을 통하여 성과창출이 기대되는 추진과제 발굴

**□ “지역소비 촉진형” 주차요금 감면제도 시행**

(목표) ① 주차요금 감면제 시행을 통해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

②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불법 주정차 감소 유도

환경 분석	과제 선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(패러다임 전환)</li> <li>-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필요시 됨</li> </ul>	→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서구지역 내 소비와 연동한 “지역소비 촉진형” 주차요금 감면제도 시행</li> </ul>

**(세부이행계획)**

○(추진목적)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의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차요금제와 소비를 접목한 “소비촉진형 주차요금제” 도입·시행

**○(추진개요)**

- 지원대상 :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자 (서구 관내 당일 소비 영수증 지참)
- 지원내용
  - 대상 : 유료 공영주차장 13개소 1163면
  - 서구 관내 당일 소비영수증 지참자가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적용
    - ☞ 2만원 이상 영수증 소지자 : 1시간 무료

**○(그동안 추진상황)**

- 「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일부개정(법적근거 마련)

**\* 조례 제5조제2항 신설 (2020. 6. 29 시행)**  
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구청장이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

- 수탁기관(서구 시설관리공단) 설득 및 협의

- 「지역소비 촉진형」 주차요금제 시행계획 구청장 방침 수립
- 사업추진 홍보
  - 코로나19관련 언론사 기획보도(15개 신문사), 홈페이지 홍보
  - 현수막 게첩 6개소, 주차 부스용 안내판 제작 홍보 40개
  - 차량부착 홍보용 포스트잇 제작(1,500권), 관련 부서 홍보 협조
  - 구정소식지 게재(2회) 등

○(적극행정)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경제활동 활성화에 일조

○(향후목표) 지속적 홍보를 통한 주차요금 감면 확대

## □ 왕길동 장기간 적치된 적재물 처리

(목표) ① 사월마을 주변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공익실현

② 장기간 지속된 구 현안사항 해결

환경 분석	과제 선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(공익을 위해 처리 필요성 대두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속적인 행정조치에도 처리지연</li> <li>- 공약사항 이행 및 조속한 처리 필요성 대두</li> <li>- 처리 책임자로부터 적치물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처리시설 증설요청</li> </ul> </li> <li>◦ (관련 규제로 인한 변경허가 불가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구 예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은 허가받은 건축물 내에 설치</li> <li>- 불법 적치물로 인해 건축물 허가가 불가하여 처리시설 증설(변경허가)불가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공익 실현을 위해 관련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여 왕길동 불법 적재물 처리</li> </ul>

(세부이행계획)

○(추진목적) 우리 구 현안사항인 왕길동 64-430번지 일원에 불법으로 적재된 적치물을 조속히 처리하여 사월마을 주변 도시환경 개선을 실현하고자 함

## ○(현 황)

-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-430 외 18필지
- 적치기간 : 1997년 ~ 2005년
- 적치면적 : 359,268㎡
- 적 치 량 : 약 9,103,399㎥(14,565,438톤)
- 발생원인: 1997년 IMF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로 생산된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의 수요처가 부족하여 장기간 적치

## ○(그동안 추진상황)

- 1997. ~ 2005.: (주)삼력환경, (주)서강ERC 순환골재 등 적치
- 1997. 9. ~ 2020. 현재: (도시개발과) 위법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(27회) 및 고발(19회)
- 2010. 11. 25.: 대법원 판결, 적재물 취거 및 토지인도
- 2014. 10.: (도시개발과) 개발행위허가 관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회신  
→ 불법사항 해소를 위한 개발행위(공작물 설치) 허가는 가능함.
- 2018. 2.: 왕길동 64-17번지 경락 → 다수의 토지주 일원화
- 2020. 1. 3.: (주)장형기업[(주)한성기업]에서 왕길동 적재물 처리계획 및  
건의사항 제출  
→ 주요내용: 신속한 적재물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증설 요청
- 2020. 5. 20.: 적재물 처리현장 방문 및 건의사항 청취
- 2020. 8. 19.: (주)장형기업에서 적재물 처리 세부계획(안) 제출
- 2020. 9. 14.: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요청
- 2020. 9. 22.: 적극행정 처리방향에 관한 의견 제시(원안의결)
- 2021. 2. 18.: (주)한성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 수리통보  
→ 시설·장비 등을 갖추어 관련부서 협의 후 변경허가 신청

○(적극행정) 관련 규제로 변경허가가 불가능한 적치물 처리책임업체에 대해  
한시적으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 및 개발행위  
허가를 통해 왕길동 불법 적재물 처리

○(향후목표) 왕길동 불법 적치물의 조속한 처리